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74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136	문대림의원	2025.06.27.	2025.08.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407	김선교의원	2025.11.19.	소위 직회부 (2025.11.21.)

나.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2.0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5.12.19.)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펫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수요 확대, 기술 융합, 해외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구의 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특구의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향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용품”이란 반려동물의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5. “반려동물서비스”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 동물진료업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6.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유통·판매 및 수출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의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및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동물전시업은 제외한다.

7. “반려동물연관사업자”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반려동물 연관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반려동물용품의 기술 검증, 제품인증 및 실증시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

② 특구의 지정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특
구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
사는 관할구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

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특구의 경우

2.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특구의 경우

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실증시설, 시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기술 개발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활용 및 거래
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창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3.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이하 “반려동물제품등”이라 한다)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반려동물제품등의 판로 확보 및 홍보
5. 창업에 필요한 세무, 회계 및 법률 등의 상담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업무
2. 제14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제15조에 따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외진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제품등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